

2019년도 1/4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19. 6.

감사위원회

1. 개요

□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□ 보고대상

- 기 간 : 2019. 1. 1. ~ 3. 31.(2019년 1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원순씨 핫라인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

□ 접수결과

- 2019년 1분기 총 230건 접수

[표 1] 2019년 1분기 창구별 월별 접수현황 (단위: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1월	2월	3월
공 익 신 고	32	9	11	12
공직자비리신고	190	68	53	69
부 정 청 탁	7	-	7	-
퇴직공무원특혜	1	-	1	-
합 계	230	77	72	81

※ 전 분기(2018년 4분기) 접수 건수 260건에 비해 11.5% 감소

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(단위: 건)

경로	합 계	온 라 인 홈페이지/모바일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	기 타 응답소/우편/방문/팩스
접수건수	230 (100%)	208 (90.5%)	7 (3.0%)	15 (6.5%)

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□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○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91건(40%)으로 가장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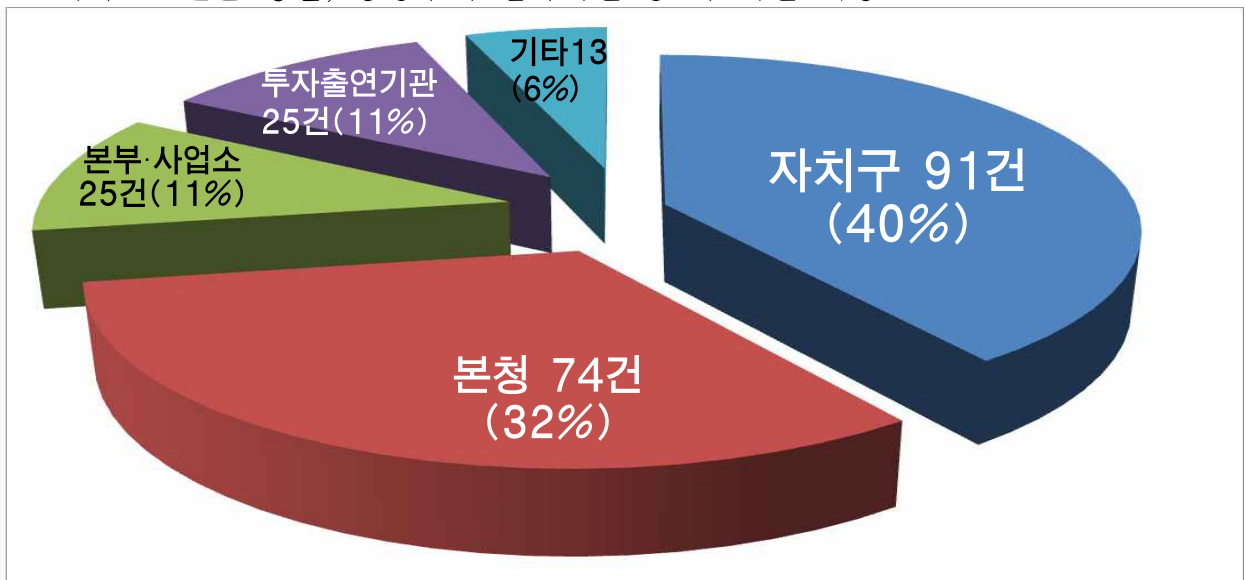
- 식품위생법/실내공기질관리법/의료법 등 공익신고 18건
- 복무·업무부적정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71건, 부정청탁 1건, 퇴직공무원 특혜 1건

○ 본청 소관 사무 제보 74건(32%), 본부/사업소 소관 25건(11%)

-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9건, 공직자비리신고 59건 등 접수
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2건, 공직자비리신고 23건

○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25건(11%), 기타 13건(6%)

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2건, 공직자비리신고 23건
- 기타 14건은 경찰,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 타 기관 해당



3. 공익제보 분류

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230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49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(단위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148건		일반민원/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230 (100%)	140 (60.9%)	9 (3.9%)	81 (35.2%)

* 청원/제안/건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,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

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 해당 신고 범위

구분	개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284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업무수행, 부당이익의 수수금지, 업무숙지의 의무,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, 인지도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

4. 제보내용 유형 분석

□ 제보 세부내역

○ 부패신고 해당 140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금 품 수 수	자 치 구	2	식사접대 등
	소 계	2	
복 무	본 청	1	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/근태 등 공무원 복무관련
	본 부 · 사 업 소	3	
	자 치 구	7	
	소 계	11	
불 공 정 계 약	본 청	3	입찰 계약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등
	본 부 · 사 업 소	1	
	소 계	4	
업 무 부 적 정	본 청	28	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의 또는 미숙/부주의로 발생한 사건 (업무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)
	본 부 · 사 업 소	9	
	자 치 구	51	
	투 자 출 연 기 관	11	
	기 타	2	
	소 계	101	
인 사	본 청	3	채용, 승진, 근무평정 등 기관의 부적정 인사 관련
	본 부 · 사 업 소	3	
	자 치 구	5	
	투 자 출 연 기 관	1	
	기 타	1	
	소 계	13	
품 위 손 상	본 청	6	공무원 등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 미준수 행위 등
	본 부 · 사 업 소	1	
	자 치 구	1	
	투 자 출 연 기 관	1	
	소 계	9	
총 계		140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○ 공익신고 해당 9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건)

구 분	건수	소관기관	조치 상황	내 용
실내공기질관리법	2	자 치 구	조치2	어린이집 악취발생 가구 반품처리
식 품 위 생 법	3	자 치 구	조치1, 해당없음1, 조사중1	음식점 위생상태 불량 과태료 부과
소 방 시 설 안 전 관 리 법	1	본부사업소	조치1	방화시설 장애관련 과태료 부과
석면안전관리법	2	자 치 구	조사중2	초등학교 석면해체공사 부실
의 료 법	1	자 치 구	조사중1	환자의 동의 없이 대리수술
총 계	9		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5. 처리 결과 및 조치 성과

□ 처리 내역 ('19년 1분기)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건)

총계	처분 및 개선 64		종결 71				조사중	취하
	처분(조치)	개선 등	해당 없음	증거 불충분	중복 종결	권한 없음		
230	8	56	32	3	18	18	87	8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(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)

□ 처분(조치)사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(단위 건)

번호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관	조치 내역
1	부패신고	직원 괴롭힘 등	본청	주의1
2	부패신고	채용 부적정	본청	통보1
3	부패신고	계약시 입찰공고 지연 등 예산낭비	투자출연기관	주의1
4	공익신고	소방시설(방화문) 관리 미흡	본부·사업소	과태료부과(500천원)
5	공익신고	음식물 재사용 등	자치구	과태료부과(200천원)
6	부패신고	주차장관리 용역 직원의 공금 횡령	자치구	환수(406천원) 및 퇴사조치

※ 동일내용의 제보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2건